

IMO 제27차 총회(Assembly) 및 제107차 이사회(Council)

I. 일반사항

- 회 의 명 : IMO 제27차 총회(Assembly), 제107차 이사회(Council)
- 기간/장소 : '11. 11. 21~12. 1(11일간)
IMO Headquarters, 영국 런던
- 참 석 자 : 해사안전연구센터 조민철, 김부영 연구원

II. 주요의제 목차

〈제27차 총회(Assembly)〉

1. IMO 협약 제61조의 적용
2. 전략계획
3. 자발적 IMO 회원국 감사제도
4. 위원회 보고서 및 권고사항 검토
 - 4.1 해사안전위원회(MSC)
 - 4.2 법률위원회(LEG)
 - 4.3 해양환경보호위원회(MEPC)
 - 4.4 기술협력위원회(FAL)
 - 4.5 간소화위원회(TC)
5. 외교회의 결과보고
6.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(London 협약) 및 1996년 의정서
7. 세계해사대학 및 국제해사법대학원 관련사항
8. 외부기구와의 관계
9. IMO협약과 회원국의 현황에 관한 보고
10. 기구가 수행하고 있는 협약 및 다자간 규정의

현황보고

11. IMO 협약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사회 회원국의 선출
12. IMO 연금위원회 선출 및 외부감사자 임명

〈제107차 이사회(Council)〉

1. 신규 사무총장 임명승인
2. 이사회 작업반의 설치
3. 기타사항

III. 주요의제 논의경과 및 회의결과

〈제27차 총회(Assembly)〉

1. IMO 협약 제61조의 적용

- IMO 협약 제61조에서는 각 회원국이 분담금 납부를 납부하여야 할 날로부터 1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, 총회가 이를 면제시켜 주지 않는 한, 총회, 이사회 및 각 위원회에서 투표권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음
- 총회 절차에 관한 규칙(Rules of Procedure of the Assembly)의 56bis에서는 상기 총회의 면제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
 - 총회가 개최가 되기 전 적어도 한달 전에 해당 회원국은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면제를 신청하고 신청사유 및 지불계획을 같이 제공

- 사무총장은 IMO 협약 제61조 적용 면제를 신청한 국가들의 목록을 이사회에 제공
- 이사회는 상기의 면제 신청에 대한 권고 및 보고를 총회에 제출
- 총회는 이사회에의 보고, 권고사항, 각 신청 내용 등을 검토하여 해당 국가에게 제61조의 적용을 면제할지 여부를 결정, 총회에서는 면제를 신청한 국가들에 대한 결정만 이뤄짐
- 제26차 총회 이후 분담금 미납으로 투표권이 상실된 회원국은 9개국임
- 캄보디아, 콜롬비아, 콩고, 코트디부아르, 도미니카, 도미니카공화국, 기니, 시에라리온, 마케도니아공화국
- 시에라리온, 마케도니아가 제61조 적용에 대하여 면제를 신청하였으며 총회는 이를 수락함. 이에 따라 투표권을 상실한 국가는 총 7개국임
- 행정 부담 경감 : 제106차 이사회에서는 행정 부담 경감방안에 대한 내용은 CWGSP 12 (11, 10)에서 심도 깊게 논의토록 작업 지시됨
- 특별한 경우에는 특정 규정의 적용의 면제가 허용되어야 함
- 선박소유으로 부터의 보호에 대하여 통신 작업반을 구성하여 논의를 계속하도록 하였으며 DE 55차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음
- 효율적인 회의의 진행을 통한 비용절감을 위하여 2012년에는 FAL 및 FP 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함
- 기구의 6개년 전략계획[Res.A.1037(27)] 및 2개년 상위작업계획에 대한 결의서를 채택함 [Res.A.1038(27)]
- IMO 강제협약 중 행정요건의 정기검토에 대한 총회 결의서를 채택함 [Res.A.1043(27)]

2. 전략계획

가. 전략계획

- 특히 지난 이사회 등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논의 및 결정이 있었음
- 사무국 직원 야근 경감 방안 : 사무총장은 회의기간 중 기구의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IMO에 의해서 계획된 모든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“Conference Division”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제한 근무시간제도를 도입하였으며, 지난 106차 이사회에서는 사무총장이 지속적으로 동 방안을 추진 하도록 결정함
- 예산 주기 변경 : 제105차 이사회에서 예산 주기를 중복구조(Overlapping framework)로 변경

나. 총회 의사규칙 및 기구 재정규칙의 개정

- 예산 검토주기를 중복구조로 변경함에 따라 기구 재정규칙 3.4와 3.5항을 수정하고 총회 의사규칙 제14조 및 제15조도 이에 맞게 수정함
- 아울러 지난 106차 이사회에서 미국이 재정 관련 외부 감사자의 임명기간을 한차례 더 연임할 수 있는 근거 조항(임기 4년, 연임시 총 8년) 제안이 승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재정 규칙 제12조 1항의 관련 규정을 수정함
- 상기 수정안을 담은 총회 결의서(안)을 부속 서로 제출함
- 사무총장은 UN에 의한 재정규정(Regulations) 및 재정규칙(Rules)의 조화 작업완료 보고
- UN 산하 조직이 당초 재정관련 규정과 규칙을 조화하고자 하였으나, 각 기구마다

- 운영 목적 및 모델이 달라 완전하게 통일된 조화규정/규칙 개발은 어려움 발생
- 현재 규정은 41%, 규칙은 53%가 통일되었으며, 이미 통일된 부분만은 적용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작업은 하지 않기로 함
- 기구는 위 완료된 작업을 근거로 2012~2013년 동안의 기구내 적용될 규칙의 개정 작업을 계획 중임을 밝힘
- 기국의 재정규정 수정에 대한 결의서를 채택 [Res.A.1042(27)]

3. 자발적 IMO 회원국 감사제도

- 가.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이행경과 보고
 - 현재까지 미수감 회원국에 'IMO 회원국 감사제도'에 관한 이행을 촉구
 - Volunteering State와 감사자 현황
 - 2005년 Circular letter No.2687 이후부터 총 62개의 회원국으로부터 감사 준비됨을 통보받음
 - 2005년 Circular letter No.2686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54개 회원국으로부터 총 191명의 감사자를 추천받음
 - * 아국은 '11. 11월 현재까지 7명의 감사관을 IMO에 추천
 - 감사자 교육
 - 기술협력위원회의 ITCP 프로그램(2010~2011)을 통해 지역별(불가리아 외 6개 지역, 총 7개 지역)에서 감사자 교육 시행 현황 보고
 - 감사자 회의 개최
 - SafeMed Project 아래 6개 국가별 워크샵 (이스라엘 외 5개 국가) 개최됨
 - 제3국의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하여

- Singapore-IMO 협정에 따라 제1차(싱가포르), 제2차 (킹스톤과 자메이카) 지역별 워크샵 개최됨
- 국가별 워크샵 개최(인도네시아, 이집트) 및 VIMSAS 워크샵 개최(Rarotonga)
- 회원국 감사 현황 및 감사 비용
 - '06. 9~'11. 8 기간 동안 49개국에 대한 회원국 감사 시행(42개 회원국에서 총 80명의 감사자에 의해 시행됨)
 - 1개국 감사 평균 소요 비용 : 약 £11,000 (감사 비용을 줄이려는 경제적 노력의 필요성을 언급)
- 차후 감사자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
 - 기술협력위원회의 ITCP 프로그램(2012~2013)에는 동 활동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시행될 예정임
- 감사 보고서의 배포에 관한 정보
 - 그 간 감사 시행 후 결과 내용을 회람문서, 총회 및 이사회 문서로 제공함

- 나. IMO 회원국 감사제도에 관한 통합 보고
 - 회원국 감사 결과를 담은 통합 요약 보고서이며, 별다른 논쟁 없이 분과 위원회2에서는 동 보고서의 결과가 통합 요약 보고의 결과가 MSC, MEPC 위원회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승인됨

4. 위원회 보고서 및 권고사항 검토

- 가. 해사안전위원회(MSC) 보고서 및 권고사항 검토
 - 총회는 다음의 결의서를 채택함
 - 도선사 승하선 설비 [Res.A.1045(27)]
 - 전세계무선항해시스템 [Res.A.1046(27)]

- 최소안전승무의 원칙 [Res.A.1047(27)]
 - 갑판적 목재운반선을 위한 안전실무규칙 (2011 TDC Code) [Res.A.1048(27)]
 - 산적화물선 및 유탱커의 검사강화제도에 관한 국제코드(2011 ESP Code) [Res.A.1049(27)]
 - 선내 폐위구역 진입을 위한 개정 권고 [Res.A.1050(27)]
 - IMO/WMO 전세계 기상-해양 정보 및 정보서비스 안내 문서 [Res.A.1051(27)]
 - 2011 항만국통제절차 [Res.A.1052(27)]
 - 2011 검사 및 증서발급 조화제도(HSSC) 하의 검사 지침 [Res.A.1053(27)]
 - 2011 강제 IMO 협약 이행 코드 [Res.A.1054(27)]
 - 갑판적 목재운반선을 위한 안전실무규칙 (2011 TDC Code) [Res.A.1048(27)]으로 결의서 채택
 - 인도, 바하마가 제안한 납치된 선원의 복지, 조기석방을 위해 취해진 조치, 임금 지불 현황과 같은 정보가 관련국가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해적 관련 결의서 수정안을 채택[Res.A.1044(27)]
 - 총회는 해적관련 국제컨퍼런스 개최 내용에 주목함
- 나. 법률위원회(LEG) 보고서 및 권고사항 검토
- 97차, 98차 법률위원회(Legal) 보고서 승인 및 결의안(부속서 1,2,3,4)에 대한 채택
 - Annex 1(A 27/C.1/WP.1) 해양사고 시 선원의 공정한 대우에 관한 결의안 초안: 추가 문구의 삽입, 제목의 변경 및 문구 변경하여 채택
⇒ 제목 변경 : “Promotion as widely as possible of the application of the 2006 Guidelines on fair of seafarers in the event of a maritime accident”
- 다. 해양환경보호위원회(MEPC) 보고서 및 권고사항 검토
- 본회의장에서 MARPOL 부속서 VI 개정(국제해운의 탄소배출규제 관련)에 관한 논의가 다음과 같이 있었음
 - “선원의 공정한 대우에 관한 지침” 총회 결의안에 대해, 인도의 요청에 따라 해양사고 관련 재판과정에서의 선원역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문구조정 등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
 - Annex 2(A 27/C.1/WP.1) 민사책임협약 CLC 증명서 보유가 요구되는 선박에 재정보증가입증명서 발급에 대한 결의안 초안 채택
 - Annex 3(A 27/C.1/WP.1) 나용선박의 난파선 제거 증서 발급에 관한 총회 결의안 초안 채택
 - Annex 4(A 27/C.1/WP.1) CLIA의 제98차 법률위원회 정보문서로 출발하여, 동 회의 동안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해 문구 삽입과 삭제, 가이드라인의 제목 수정 및 단어 선택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가 있었음. 총회 채택 요청 하였으며 동 결의안이 차기 법률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재검토 동의
 - 선원의 공정한 대우에 관한 지침 관련 총회 결의서의 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, 인도는 선원이 해양 사고로 인하여 억류되는 경우 법정진술 뿐만이 아니고 재판 판결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동 지침을 개정하는 의견을 제시함. 위원회는 인도의 제안 내용이 결의서 전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함

- (인도) 상기 부속서는 체약당사국이 62개국에 불과하며, 49개국이 찬성하여 가결된 개정안으로서, 170개국 전체 회원국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음(중국, 브라질 등의 주요 개발도상국에서 동의를 표함)
- (사무국) 체약당사국 간에 결정된 사항으로서 총회에서 이에 대한 개정을 명할 수 없음을 표명하였음 (영국, 프랑스,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에서 동의가 있었음)
- 특별한 개정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회의 기록에 인도의 발언내역을 남기기로 함
- 채택 요청된 결의안은 MSC 공동 결의서로 의제 9번 MSC 관련 채택 결의서 목록을 참조

라. 기술협력위원회(TC) 보고서 및 권고사항 검토

- 2008~2009년 회계 보고서와 2010~2011년 중간 보고서의 회계 내용 검토
- MDGs와 ITCP와의 연계
 - MDGs¹⁾와 연계(A.1006(25))하여 특별히 ITCP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성과에 주목함
- 2012~2013년 ITCP 프로그램 구성
 - 15개의 지역별, 국가별 프로그램(총 예상 지출액 US 24M)
 - 국가별 프로그램 구성 내용은 주요 해상에서의 해적퇴치, 자발적 회원국 감사 제도의 이행과 관련, 세계 기후 변화 등을 주요 이슈로 선정
- TC Fund
 - '12~'13년 기술협력사업은 16.4백만불 소요 예상
- 해운분야에서의 역량 강화와 해기 여성 통합을

통해 해기인력 역량 개발 및 지원을 포함하여, 인력 역량 강화 지원, 국제 교육 기관의 지원, 교육에 기여를 하고 있는 ITCP의 실적 리뷰 및 주목

- 차기 의장단 선출 : 케냐의 Ms Nancy Karigithu(의장), 아국 박영선 국토해양관(부의장)에 선출

마. 간소화위원회(TC) 보고서 및 권고사항 검토

- 대한민국은 간소화 위원회의 작업에 대하여 감사를 표명하고, 아국의 주도로 이뤄진 싱글 윈도우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지침이 되길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함
- 총회는 사무총장의 정보제공 내용에 주목 하였으며, 관련 내용을 승인함

5. 외교회의의 결과 보고

가. HNS 협약 개정을 위한 2010년 국제 외교회의의 결과보고

- HNS 협약 개정을 위한 2010년 국제회의의 결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, 총회는 결과에 대하여 주목함
 - 2010년 HNS 프로토콜(Protocol) 채택 (문서 LEG/CONF.17/10)
 - * 70개 회원국이 채택에 서명하였으며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까지 회원국의 가입 동의 서명 접수를 받고 있음 (협약 21조에 의거, 프로토콜의 발효는 요건 충족시 18개월 후 정식 발효됨)
 - 4개의 결의서 채택됨(문서 LEG/CONF.17/11)

1) MDGs : Millennium Development Goals

나. STCW 78협약 개정안에 대한 2010년 국제 외교회의 결과보고

- 사무총장의 동 선원의 날이 결정하게 된 배경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외교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재 언급하면서 몇 회원국의 감사와 선원의 날 의미를 촉구하는 발언이 있었음. 총회는 사무총장의 정보제공 내용에 주목함

6.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 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(London 협약) 및 1996년 의정서

- 동 위원회에서 상정한 보고서 대부분에 대해 확인 또는 승인 실시
- MARPOL 부속서 VI 개정(국제해운의 탄소 배출규제 관련)에 관한 논의
 - (인도) 위 부속서는 체약당사국이 62개국에 불과하며, 49개국이 찬성하여 가결된 개정안으로서, 170개국 전체 회원국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음(중국, 브라질 등 동의)
 - (사무국) 체약당사국 간에 결정된 사항으로서 총회에서 이에 대한 개정을 명할 수 없음을 표명하였음 (영국, 프랑스 등 동의) 다만, 총회 기록에 인도의 의견을 남기기로 함

7. 세계해사대학 및 국제해사법대학원 관련 사항

- 세계해사대학 및 국제해사법대학원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였으며, 총회는 우리나라 지원 사업에 대하여 감사를 표시

8. 외부기구와의 관계

- 비정부간 기구와의 관계
 - 아국은 지난 제106차 이사회에서 비정부간 기구의 자문자격 유지를 위한 요건과 2년간 객관적인 활동이 식별되지 않는 비정부기간들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의 도입에 대한 제안과 비정부간 기구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 및 기준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음
 - 사무총장은 내년 이사회에서 비정부간 기구의 자격에 대한 지침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아국 발언에 대하여 지지
- 2012년 세계해사의 날 병행 행사는 바레인에서 개최 결정
 - 2012년 세계해사의 날 테마 : 타이타닉 사고 100주년
- 국제해사상
 - 그리스가 사무총장 Mitropoulos의 국제해사상 후보로 추천하였으나, 스웨덴 등 일부 국가들이 사무총장 수상에 대하여 부적절함을 언급
 - 총회는 2011년 수상 후보자 추천을 2012년 1월 16일까지 요청
- 세계최고의 용감함 선원상
 - 제104차 이사회에서 호주 정부에서 추천한 Mr. James Fanifau씨를 수상자로 결정하였으며, 2010년 제88차 해사안전위원회(MSC)에서 시상식을 거행
 - 제106차 이사회에서 한국 정부에서 추천한 석해균 선장을 수상자로 결정하였으며, 시상식 실시
 - 2012년 수상 후보자 추천에 관한 회람문서(No.3223)가 배포되었으며 후보자 추천서는

- 12. 4. 16까지 IMO에 제출되어야 함
- 2012년 수상자는 제108차 이사회('12. 6월)에서 논의될 예정이며, 2012년 수상자에 대한 보고는 제28차 총회에 제출될 예정임
- 총회는 2011년 수상 후보자 추천을 2012년 1월 16일까지 요청

○ 선원의 날

- 매년 6월 25일을 “선원의 날”로 지정한 결의서를 채택
- 정부, 해운기구, 기업, 선주 등 모든 관련된 단체들에게 선원의 날 기념을 요청
- 회원국, 정부간 기구, 비정부간 기구에게 선원의 날 관련 정보를 매년 IMO에 제출을 요청

9. IMO협약과 회원국의 현황에 관한 보고

- 팔라우 공화국이 2011년 9월 8일자로 IMO 협약을 수락함으로써 회원국이 됨. 팔라우의 가입으로 2011년 9월 8일 현재 IMO 회원국은 170개국이며, 준 회원국은 3개국으로 변경 없음

10. 기구가 수행하고 있는 협약 및 다자간 규정의 현황보고

- 새로 채택된 협약(의정서) 및 협약(의정서)에 대한 개정 : 2건
 - 협약 및 의정서 : 새로 채택 1건
 - 협약 및 의정서의 개정안 : 새로 채택 1건
- 발효된 협약(의정서) 및 협약(의정서)에 대한 개정 : 46건
 - 협약 및 의정서 : 발효 2건
 - 협약 및 의정서의 개정안 : 발효 44건

- 발효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협약(의정서) : 26건
 - 협약 및 의정서 : 9건
 - 협약 및 의정서의 개정안 : 17건
- 사무총장은 회원국에게 아직 미 발효 중인 협약 및 의정서 등의 조기 가입 및 수락에 대한 회원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함

11. IMO협약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사회 회원국 선출

- A 및 B 카테고리에 각 10개국씩 입후보함으로써 별다른 입후보 선거 없이 이사국으로 선출되었으며 C 카테고리 그룹은 155개국씩 선거에 임하여 다음과 같이 선출됨
- ※ C 카테고리에 지원한 나이지리아, 사우디, 페루, 쿠웨이트, 쿡아일랜드, 오만 탈락

구 분	구 성	국 명
A (10개국)	주요 해운국	대한민국, 일본, 중국, 이태리, 그리스, 영국, 미국, 파나마, 러시아, 노르웨이
B (10개국)	주요 화주국	아르헨티나, 방글라데시, 브라질, 캐나다, 프랑스, 독일, 인도, 네덜란드, 스페인, 스웨덴
C (20개국)	지역 대표국	싱가폴, 인도네시아, 호주, 사이프러스, 터키, 필리핀, 칠레, 말레이시아, 남아공, 멕시코, 바하마, 태국, 케냐, 벨기에, 모로코, 라이베리아, 자메이카, 몰타, 이집트, 덴마크

12. IMO 연금위원회 선출 및 외부감사자 임명

- Capt. Moises De Gracia(파나마)와 Mr. Neil Ferrer(필리핀)이 2012~2013년 연금 위원으로 선출

- 외부감사자는 가나와 영국이 경합하여 투표 결과 가나후보로 확정

〈제107차 이사회(Council)〉

1. 신규 사무총장 임명 승인

- 지난 제106차 이사회에서 신입 사무총장으로 당선된 Mr. Sekimizu 임명 동의안을 총회는 만장일치로 승인
- 외부감사자는 가나와 영국이 경합하여 투표 결과 가나 후보로 확정

2. 이사회 작업반의 설치

- 호주는 다음 이사회(제108차 2012. 6. 11~14) 기간 중 회원국 주관청의 불필요한 업무

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작업반 설치 제안, 다수 국가 지지

- 스웨덴은 IMO의 장기 재정안정 방안 검토를 위한 특별 작업반 제안을 하였으나 지지를 받지 못하여 기존의 이사회 의제에 포함 검토 결정

3. 기타사항

- 제28차 총회는 2013년 가을 영국 IMO 본부에서 개최예정
- 우리나라는 활동이 미미한 NGO의 퇴출을 위한 식별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하였는바, 이번 총회 회기는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다음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